



검색어를 입력하세요.

검색

국가상징
알아보기열린장관실
이동통신누

일반민원 신청

일반민원 조회

유사민원 공개

일반민원(질의응답)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**국민권익위원회**에서 운영하는 **국민신문고**를 통해 서비스 합니다.

[국민신문고 바로가기](#)

<연락처 안내>

민원신청, 로그인 등 시스템(오류) 문의: 국민권익위원회 1600-8172

환경부 민원(업무)관련 문의: 환경부 민원실 1577-8866

환경부 부서별 전화번호안내 바로가기

사례

대기방지시설 예비용 자가측정 대상 여부

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보일러 2대 중 1대는 주 생산 공정에서 스팀용 보일러로 가동 중이고 1대는 예비용으로 신고를 받아 사용하는 보일러가 고장났을 경우 예비용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. 예비용 보일러 1대도 자가측정 대상에 해당되는지요?

2017.07.31 17:12:00

답변

1. 안녕하십니까?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.
2. 문의내용은 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질의“로 보이며,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예비용 배출시설이라 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.
 - 따라서, 예비용 보일러도 자가측정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.
 - 한편,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 실시하여야 하므로 예비용을 포함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록부 등을 통해 배출시설이 가동되거나 가동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구비가 필요합니다.
 -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창일(044-201-6912, rebirth@korea.kr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담당부서 대기관리과

관련법령

목록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				
☐ 매우만족	☐ 만족	☐ 보통	☐ 불만족	☐ 매우불만족
				확인
최종수정일: 2020-09-03 14:27				

외청 및 소속기관	관련기관	다른행정기관	지방자치단체
-----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



[홈페이지 이용안내](#)
[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](#)
[개인정보처리방침](#)
[저작권정책](#)
[환경행정서비스현장](#)
[홈페이지개선의견](#)
[뷰어다운로드](#)

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[고객지원센터\(민원실\): 1577-8866](#)

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,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합니다.

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홈페이지 장애문의: 044-201-6481

Copyright Ministry of Environment. All Rights Reserved.